

# 공간디자인연구소 규정(4-2-6)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공간디자인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자인분야의 체계적인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공간환경 디자인의 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간환경 디자인 분야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추구해 나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목적(제2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간디자인 분야에 관한 국내·외 학문연구 및 조사연구
2. 내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의 수행
3.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사업

제4조(위치) 본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5조(규정의 변경) 본 연구소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6조 (조직) 본 연구소는 사업(제3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직을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1. 실내공간 디자인팀
2. 외부환경 디자인팀
3. 그래픽 디자인팀

제7조 (임원)

1.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소 장 : 1명
- 나. 간 사 : 1명

2. 간사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제 3 장 사업 및 예산·결산

제8조(재정의 수지) 본 연구소의 재정은 건양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연구소 자체의 자체 수익금 및 연구조성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한다.

제9조(연구비등)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1조(해산후 재산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 권리, 의무는 건양대학교에 귀속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건양대학교에서 따로 결정한다.